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528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0. 5. 25.
4. 회부일자 : 2020. 5. 29.

II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8조의 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III . 주요내용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19년도 말 조성액(a)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 말 조성액(e)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규모 (f=d+e)
		조성계획(b)	집행계획(c)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0	1,000,000	353,600	646,400	0	646,400

※ 집행(사용)계획은 남북관계,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IV. 참고사항

○ 관계법령: [참고자료1]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8조의2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

○ 시도별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조성 현황: [참고자료2]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528호로 제출되어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기금 개관

-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민의 남북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분야의 확대·장려 정책 기조에 맞춰 교육 분야의 남북교류 확대·활성화를 위해 'DMZ 생태평화체험', '남북교원학생 평화교육교류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제정세 및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 교육당국 간 남북 교류 채널 미비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1] 2019년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 추진 사업 내용 및 예산액

남북교육교류 추진 사업	소요 예산 (단위: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DMZ 생태평화체험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50,000	0	50,000

남북교원학생 평화교육교류추진	190,000	0	190,000
남북교육교류협의체 운영	10,000	9,526	474
합 계	250,000	9,526	240,474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새로운 남북교류 추진 방향을 기반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9.7.18.)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관계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해소하고 탄력적 사업운영을 통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것입니다.

나. 수입·지출 계획

- 금번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영 계획안의 수입계획은 총 10억원으로, 수입계획의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기금의 설치 근거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르면¹⁾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 운용 계획안의 수입계획과 조례상의 재원 조성 출처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기금 재원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기금 운용의 혼선을 해소하고 기금 재원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속한 조례

1) 제14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에²⁾ 따라 새로운 기금을 설치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시의회 및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하나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러한 절차가 누락된 채 제출되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동 기금의 지출액은 비용자성 사업비 3억 5천 4백만원, 예치금 6억 4천 6백만원으로 총 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용자성 사업비는 서울시교육청이 남북교육교류협력으로 통일교육 활성화 및 점진적인 통일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북한 지역 역사유적지, 교육기관, 생태환경 등 현장체험학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북측의 교육당국, 학교, 학생 대상 교육분야 교육협력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5조 각호의 기금 사용 용도에³⁾ 적합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지출액 중 예치금은 서울시교육청 교육금고인 농협은행(농협중앙회)에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2)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1.~4. 생략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3)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동 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제16조제1항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기금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4호, 2008.3.11.)」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⁴⁾ 따라 기금별로 별도 금고 지정이 가능한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금리가 높은 금고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끝으로

- 동 운용계획안은 동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탄력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함께 남북교류 사업이 교육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련기관과의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 안정적이고

4)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4호, 2008.3.11.제정)

가. 기금자산관리(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 기금의 현금자산은 세계현금의 보관의 절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함으로 자치단체 금고에 보관
※ 자치단체 금고지정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기금별로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나. 기금여유자금 관리

-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
-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 지출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

[시행 2020.4.30.] [법률 제16887호, 2020.1.29.,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

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8.] [서울특별시조례 제7214호, 2019. 7. 1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 및 학예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개하는 각종 교류와 협력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사업의 기본 원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과 북한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교류협력
2.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3.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남북교육교류협력정책

제6조(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협력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협력사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
5.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학교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남북교류협력 관련법인 및 단체 등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제8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 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및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장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제14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제1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남북교육교류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남북교육교류업무 담당 장학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 ③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교육감이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존속기한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부교육감과 소관 부서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이나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3조(포상) 교육감은 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학생, 학교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